

1. 개정이유

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, 조사, 심의 등을 ‘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(기존 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’에서 명칭변경(‘25.1.1~))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의기능이 환경부에서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2개를 폐지(안 제2조)
- 나.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,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및 재심사 청구서 제출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서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(안 제45조의2, 안 제45조의6, 안 제45조의10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화학·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”을 “화학·환경·보건”으로 한다.

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”을 “은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구제급여”로, “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”를 “첨부하여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45조의3제2항 중 “관리위원회”를 “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”으로 한다.

제45조의4제1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에게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서”를 “에게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의결과서”로

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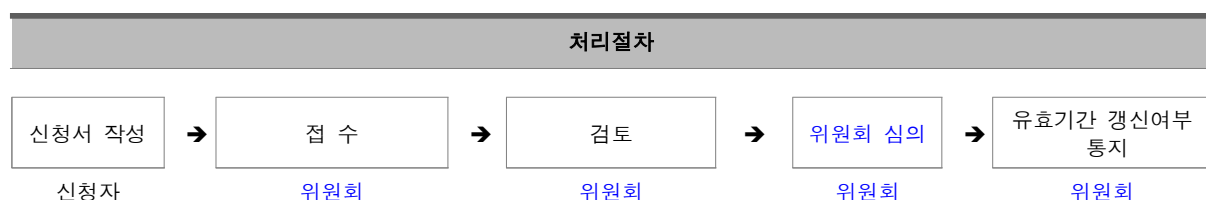
제45조의6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한다.

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”을 각각 “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지급을 중단”을 “지급중단을 결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2항”을 “위원회는 제2항”으로, “시정한 경우”를 “시정했다고 인정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하도록 알려야 하고”로 한다.

제45조의10제1항 중 “사람은 별지 제46호의5서식”을 “사람은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”으로,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”을 각각 “위원회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,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
별지 제46호의2서식, 제46호의3서식 및 제46호의5서식을 삭제하고, 별지 제46호의4서식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귀하”를 “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귀중”으로 하고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.	제2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</u>	<삭 제>
5. <u>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</u>	<삭 제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<u>화학·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</u>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화학·환경·보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④·⑤ (생략)

제45조의2(구제급여 지급 신청)

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
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
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은 별지
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
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
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
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
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
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
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
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
야 하며,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
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
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제45조의3(조사·감정 등의 절차
등) ① (생략)

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
1항에 따른 조사·감정 등의 결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45조의2(구제급여 지급 신청)

① -----

-----은 「환
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
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
제5호서식의 구제급여 -----
----- 첨부하여 「환
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
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
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 위원회는 -----

-----.

제45조의3(조사·감정 등의 절차
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45조의4(구제급여 지급결정의
통지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
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
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
(이하 “구제급여대상자”라 한
다)에게 별지 제46호의3서식의
구제급여 지급결정서를 발급해
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
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
급결정 결과를 통지할 경우 그
결정의 내용 및 법 제48조의13
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
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제45조의6(구제급여 지급결정의
유효기간 갱신 신청) 법 제48조
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
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
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
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구
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

---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
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-----

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5조의4(구제급여 지급결정의
통지) ① 위원회는 -----

---에게 「환경분쟁 조정 및
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」 별지 제22호서식의
심의결과서---.

② 위원회는 -----

-----.

제45조의6(구제급여 지급결정의
유효기간 갱신 신청) -----

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45조의9(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)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에 따른

---- 위원회에 -----
-----.

제45조의9(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) ① 위원회는

-----.

② 위원회는 -----

----- 지급중단을 결정-----.

③ 위원회는 제2항-----

----- 시정했다고 인정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하도록 알려야 하고 -

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
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
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
지 않는다.

④·⑤ (생략)

제45조의10(재심사 청구) ① 법
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
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
제46호의5서식의 재심사 청구
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
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
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
해야 한다.

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
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
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
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
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
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
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
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
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---. 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45조의10(재심사 청구) ① ----

----- 사람은 「환경
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
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
제6호서식----- 위
원회에 -----
-----.

② 위원회는 -----

-----.

③ 위원회는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회는 법 제48조의13제1

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,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